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명)

시험 방법	계급	직 령 (직류)	선발예정 인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자소득총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급	교육행정	30	27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보건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합 계			34	31	2	1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 숙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 개론 과목 제외**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을 따름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사서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소지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2.4.22.금)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별첨1>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22.4.22.금)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 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개	미회수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18.(월) 09:00 ~4.22.(금) 18:00 [최소마감일 : 4.25.(월)18:00까지]	제1·2차	필기시험	5.30.(월)	6.18.(토)	7.19.(화)
	제3차	면접시험	7.19.(화)	8.6.(토)	8.23.(화)

※ 시험장소(필기, 면접)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use.go.kr>)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4.18.(월) 09:00 ~ 4.22.(금) 18:00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은 09:00부터 24시간, **접수마감일(4.22.금)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2) 취소기간 : 4.18.(월) 09:00 ~ 4.25.(월) 18:00

※ 응시원서 취소는 취소시작일은 09:00부터 24시간, **취소마감일(4.25.월)은 18:00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로 환불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원서접수시 반드시 환불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입력

-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5)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반명함,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확장자명 JPG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2)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응시표는 5.30.(월) 10:00 ~ 6.18.(토) 10:00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에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7)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8)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가산특전 등의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9)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조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사서직렬)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교육행정	-	변호사	5%	· 가산대상 자격증 【별첨2】 참조
· 보건(보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라. 참고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가능합니다.
- 2) 위의 “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다”(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 + 【직렬별가산점 1개】

-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4)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5)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방법

- 1)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교육행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에 공고합니다.

- 가.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바. 답안지의 작성은 OMR 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량 수정테이프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는 해당문항 무효처리)
- 사.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가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입실 불가)
- 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차.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카.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 ☎ 052-210-5723~572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별첨 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2.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2.4.18.(월) 09:00 ~ 2022.4.22.(금) 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7 참조)
-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소 : (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팀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 제공여부 안내(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2-210-5723)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참고】** 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3급2호) 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6급) 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급) 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 으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 로서 눈의 운동장애 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라.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마.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바. 시험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유선을 통해 적합 여부 통보 및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2022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 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지 대필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6급
	하 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3>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4~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6급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의사진단서(기존 3급 2호인 사람 중에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3급 1,2호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점자문제지, 축소 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0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0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5>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2~6급	
기타 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시험시간 연장 불가	·편의지원 신청서<서식6>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단, 화장실 사용 시간 시험 시간에 포함)	·편의지원 신청서<서식7>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상지지체·뇌병변 장애)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상지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상지지체·뇌병변 장애)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상지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소견서 불인정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별도시험실 배정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뇌병변 장애인만 해당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인만 해당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지체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하지지체 장애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동행 보호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동행 보호자의 시험실 입실은 제한됩니다.

(보호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소견서 불인정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청각장애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증명서 사본
	보조공학기기 지참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6]

편의지원 신청서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응시직렬 :
 성 명 : (휴대전화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 장애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제공신청	구비서류
<본인 직접 기재>	<본인 직접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 사본○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원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7]

편의지원 신청서

(임신부용)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구분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 의사 소견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별첨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 행정			변호사 5%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3%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5%